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LH공사 군지원실장 변 기 종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 도시화 등 작전환경 변화와 작전 수행개념 변경에 따른 -

변기종(LH공사 군지원실장)

I. 서 론

1.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 국토의 8.9%

구 분	계	보 호 구 역			비행안전 구 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소 계	통 제	제 한		
면적(km ²)	9,112	6,057	1,763	4,294	3,055	서울시 전지역

2.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목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취지('08.9.22일부 시행)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다”

4. 도시화등으로 인해 급속히 작전환경이 변화되고 작전 수행개념

변경에 따라 기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軍과 협의시 주로 관할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전성 검토의
기준을 보다 더 실효성있게 개선되어야 함.

* 작전성검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요청시 관할 및 관리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정규작전, 국지도발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
련과 관련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을 검토 하는 것

II. 본 론

1. 현실태 및 문제점

-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주로 군사분계선(DMZ)으로부터 25km 후방지역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 북부지역의 **대규모의 도시화 확산**과 강원 북부지역의 **토지이용소요 증가**로 인해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국민재산권 보장측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미지정된 지역**이라도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은 작전계획상 FEBA "C" 및 "D" 지역의 거점진지들이 계획되어 **군의 작전성 검토 대상지역으로 軍협의 거쳐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함**.
- * FEBA : forward edge of the battle area(최전선)
- * 서울 북부지역('예': 은평뉴타운)까지 FEBA "D" 지역에 해당됨)

- 다. **軍은** 년차별로 최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자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위탁관리 : 군사시설보호구역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합참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와 합의각서 체결 후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함.

라. 도시화 확산등 급속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작전수행 개념을 과감하게 변경함으로써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의 벨트형태로 되어있는 **FEBA"A"~"D"의 주방어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범위**와 각부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작전성 검토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예' 1) **FEBA"A"~"D" 중심지역의 전투근무지원 공간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제한**

'예' 2) **거점진지 전면이 울창한 숲으로 사계가 제한되어 전투임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점진지 전면에 공원묘지 조성 등 작전임무수행에 지장 없음에도 개발 불가 통보**

마.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국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軍 협의시 보다 더 신중히 검토 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 재협의 요청제도의 문제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 5항)의 **재협의 요청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행사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초 관할부대의 심의결과에 의의가 있을 경우 **직근상급부대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나, 재협의 요청에 대한 직근상급 부대의 심의시 당초 관할부대에서 통보한 심의 결과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재협의 요청자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협의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여야 하나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의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음.

'예' 최근 00지역 탄약고주변 재산권 행사 가능여부 재협의 요청에 대해

- 양거리(안전거리) 기준에 얼마나 저촉이 되는지 미통보
- 기준거리이내 다른 시설물은 건축 허용되어 기건축됨.
- 재협의 요청시 측량결과에 대한 확인없이 관리부대 의견 그대로 수용

2. 합리적인 개선방향

가. 국토이용의 효율성측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따라 작전환경 변화와 작전수행 개념을 고려, 軍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현재의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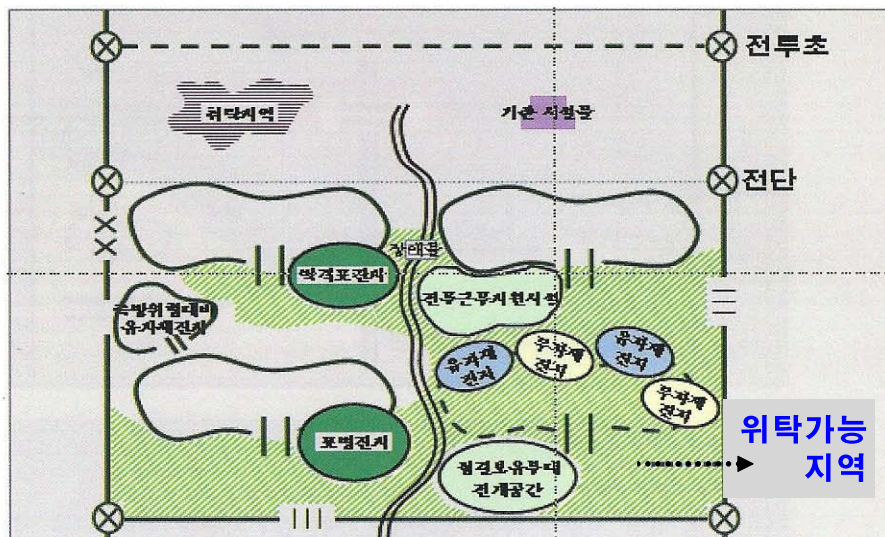
1) 접경지역의 전 ·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민간인 통제선 설정의 적절성 재검토

2) 도시화등 작전환경 변화와 부대임무를 고려하여

FEBA "A~D"지역의 제한보호구역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과감한 지정 해제 및 지자체로 위탁관리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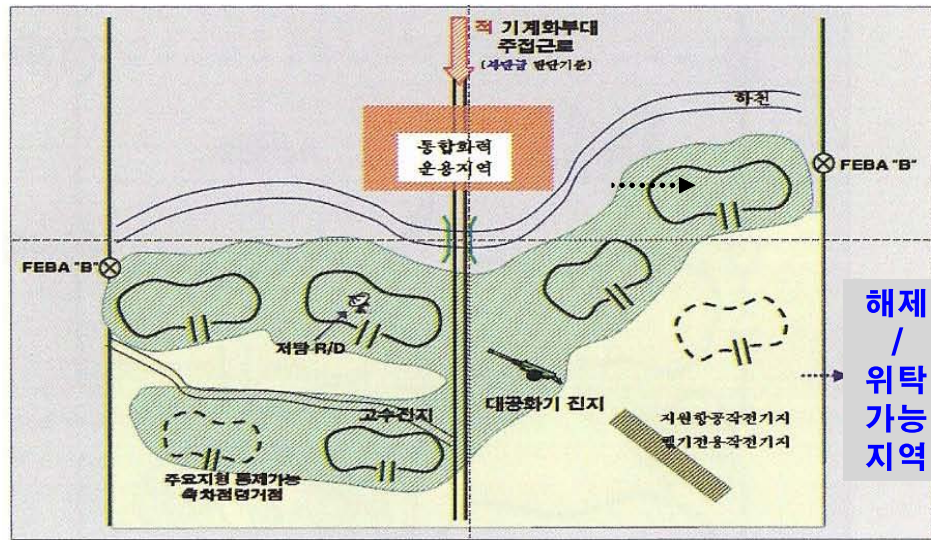
(가) FEBA "A"지역



* 거점중심상 작전임무수행 지장없는 범위내 **지자체 위탁**

- 전투군무지원시설 전개지역, 집결보유부대 전개공간등
- 예비거점 지역중 유자재진지를 제외한 지역

(나) FEBA "B"지역



* 작전임무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내 **보호구역 해제 및 지자체 위탁**

- 예비 거점지역(단, 주요지역 통제가능 거점 제외)
- 전투근무지원시설, 예비대 전개 공간등

(다) FEBA "C", "D"지역

- 선단거점 전방지역과 주요지역 통제 가능한 지역이외 **해제 및 지자체 위탁**
- 지자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병행 검토

나. 작전성 검토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1) **전투진지와 이격거리 기준을 대폭 완화**토록 검토하고
하천 등 지역별 작전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책임지역
지휘관(장성급)에게 과감히 위임

구 분		현재 기준	개선(안)
개인전투진지	FEBA 'A','B'	500m 거리 확보	250m 거리 확보
	FEBA 'C','D'	300m 거리 확보	150m 거리 확보
직사공용화기	FEBA 'A','B'	전지역 500m 이내	250m 거리 확보
	FEBA 'C','D'	거점 선단 진지만 500m 이내	150m 거리 확보

- * 단, 適 전차 기동이 제한되는 하천이나 장애물(단애, 도로대화구등)이 있을 경우 극복시간을 고려하여 작전책임지역 지휘관 판단하에 이격 거리 축소 가능

‘예’ ○○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에

FEBA“D” 중심거점의 진지와 이격거리 관련 협의중

- * ○○천(하폭 50~80m)을 고려 이격거리 협의결과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2) 작전임무수행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와 임무수행에 유리한 조건 제공시 과감히 재산권행사를 허용토록 각종 사례를 관할부대에 전파하고 교육하여 눈치보거나 책임전가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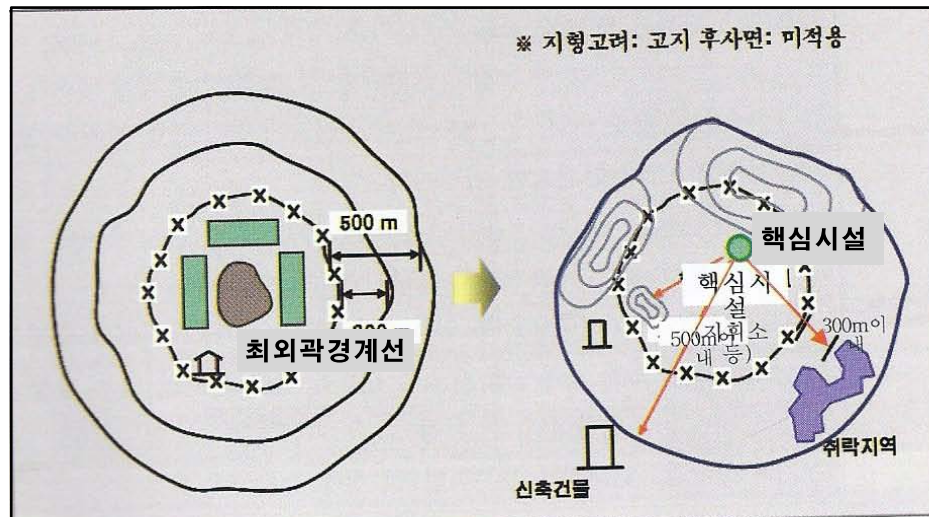
- * ‘예’ (가) FEBA "A"~"D" 중심지역의 전투근무지원시설 전개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작전성 검토시 공장신축 허용요구에 대해 ‘부동의’한 경우는 전시에 신축공장을 활용하여 전투근무지원시설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가능

- (나) 거점진지지역 전면에 울창한 숲으로 사계가 제한되는 상태에서 진지 전방에 공원묘지, 체육시설, 골프장 등 설치시 오히려 작전임무수행에 유리하므로 개발행위 허가 가능

다. 군사시설보호법등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작전성 검토기준등)의
상반된 내용에 대해 검토후 일관성있는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비 실시

* '예' : 보호구역 설정거리 기준이 다름

- 법 ⇨ **최외곽 경계선** 기준, 지침 ⇨ **핵심시설** 기준



라. '재협의' 요청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1) '재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국민입장에서 성의있는 조치 필요

- 재협의 요청자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 상담 실시**
- '재협의' 요청 접수부대(직근상급부대)의 당초 관할부대의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가능 방법' 제시 방안 검토
- '재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시에는 **요청자의 요구시 심의 前 심의위원들에게 반드시 재협의 요청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에 반영

2) '재협의' 요청사항의 직근상급부대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추가 협의제도**'를 신설하여 차차상급부대이상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협의에 대한 심의를 **3심제도로 개선** 검토

Ⅲ. 결 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목적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며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으나,
좁은 국토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시화등 급속한 작전환경 변화와 작전수행개념 변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작전성 검토 기준과 협의 절차를 개선하여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없는 범위 내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